

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



산업건설위원회

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6. 11. 17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6. 11. 21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2. 16.

2. 제안사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기금별 기금 설치·운용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설치·운용 중인 기금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에 따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.

3. 기금개요

가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42조: 재산과 기금의 설치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: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

나. 운용방침

-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·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·운용하는 특정 자금임.

- 기금 운용체계를 총괄부서와 담당부서로 이원화하여 책임성·투명성 확보
 - 총괄부서: 기획감사실
 - 담당부서: 기금관리운용 부서
-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·운용

4. 기금운용 계획안

(단위: 천원)

기 금 명	2016년말 현재액 ㉠	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		2017년도 말 조성액 ㉡=㉠+㉢-㉣	증 감
		수 입 ㉢	지 출 ㉣		
합 계	1,087,013	549,400	481,700	1,154,713	67,700
재 난 관 리 기금	858,216	525,000	477,000	906,216	48,000
옥외광고물정비기금	228,797	24,400	4,700	248,497	19,700

5. 전문위원 검토요지

가. 재난관리기금(p69)

- 재난관리기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 및 「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」에 따라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,
-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2017년도 법정 적립금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1 이상(195,141천원)인 250,000천원을 적립할 계획임.

-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50,000천원, 보조금 260,000천원, 예치금 회수 858,216천원과 이자수입 15,000천원으로 총 1,383,216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, 지출계획은 학동천 소하천 정비공사 100,000천원, 자동우량정보시설 보강 및 최신 재난정보시스템 구축 360,000천원, 기금예치금 906,216천원과 보조금 반환 17,000천원으로 총 1,383,216천원임.
-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적립금 확보와 사업의 목적 ·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, 매년 수요조사를 거쳐 사업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.

나. 옥외광고정비기금(p77)

- 옥외광고정비기금은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 및 「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0. 3. 29. 조례로 제정되었음.
-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예치금 회수 228,797천원, 이자수입 3,400천원, 기타수입 21,000천원으로 총 253,197천원을 조성계획이며, 지출계획은 기금운영비 4,700천원, 기금예치금 248,497천원으로 총 253,197천원임.

-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법정적립금 확보, 기금사업의 목적 및 사용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자: 해당없음

7. 토론요자: 해당없음

8. 수정안 요자: 해당없음

9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10. 소수의견 요자: 해당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